

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사유

성동구청 직장상조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출자(직원)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대출에 대한 이율은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**연 2.9%로 인하**

- 1) 기존대출자의 대출에 대한 이율은 연 4%로 변동 없음
- 2) 신규 대출자의 대출이율 적용은 **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**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직장상조회 자산 현황(2015. 5. 31.기준)

(단위: 원)

자 산		자 본	
계	5,280,722,729	계	5,280,722,729
일반예치금	513,367,394	출 자 금	5,213,163,852
정기예치금	1,400,000,000	미처분이익잉여금	34,429
신용대출금	3,367,355,335	당기순이익금	63,479,482
		미지급금	4,044,966

나. 손익계산서

(단위: 원)

수 입		지 출	
63,962,912		63,962,912	
◦ 대출금이자	59,803,780	◦ 유지보수비	210,000
◦ 일반예치금이자	4,125,132	◦ 탈퇴자 배당금	273,430
◦ 연체이자	34,000	◦ 당기순이익금	63,479,482

□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대출)</p> <p>대출에 대한 이율은 연 4%로 하고 12개월, 24개월, 32개월, 50개월 또는 60개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다.</p> <p>(단 대출시 1,000만원 미만은 32개월, 24개월, 12개월 적용)</p>	<p>제8조(대출)</p> <p>대출에 대한 이율은 연 2.9%로 하고 12개월, 24개월, 32개월, 50개월 또는 60개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다.</p> <p>(단 대출시 1,000만원 미만은 32개월, 24개월, 12개월 적용)</p>

□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자금관리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대출금 상환)</p> <p>2. 대출금리는 연 4%로 하되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단 이자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.</p>	<p>제8조(대출금 상환)</p> <p>2. 대출금리는 연 2.9%로 하되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단 이자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.</p> <p>부칙 (시행일)이 정관은 2015년 6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</p>